##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전부개정 2019. 3. 5. 개정 2019. 6. 12. 학칙개정 2021. 10. 1. 개정 2023. 4. 14.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에 따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후보 선 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방법)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우리 대학"이라 한다) 의 총장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접 · 비밀 선거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3, 4, 14.)

② 총장임용후보자의 선거에 관하여「위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 과학기술대학교 학칙」 및 그 밖의 다른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로서 우리 대학 총장임용후보 자의 선정을 위하여 우리 대학에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 2. "총장임용후보자" 란 이 규정에 따라 선정된 2명의 후보자를 말한다.
- 3.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이하 "선거"라 한다)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이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 4. "후보자" 란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 5. "선거인"이란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선거기간 개시일에 선거인명부가 아직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

- 이 있는 사람)를 말한다.
- 6. "교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말한다.
- 7. "직원"이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직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 포함)을 말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가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6. 12.)
- 8. "조교"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인 조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교인사규정」 제3조2에 따른 대학회계조교를 말한다.
- 9. "학생"이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말한다.
- 10. "관할선관위" 란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및 「위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대학의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노워구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 11. "선거기간" 이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 12.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 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13. "선거운동기간" 이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 ② 선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할선관 위의 해석에 따른다.

### 제2장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 제4조(구성 및 존속) ① 총장은 총장임기만료 7개월 전까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4. 14.)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10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1. 교원위원 우리 대학의 교수, 부교수 중에서 각 단과대 학장, 일반대학원장이 추천하는 교원 10명 이상 30명 이하 (각 단과대학마다 교수 인원수를 기준으로 30인당 1인을 배정하여 추천하되, 소수점 이하 잔여인원에 대하여는 절사한다. 다만, 교원수 부족으로 1명도 배정되지 않는 단과대학에 대해서는 1명을 배정하되, 미래융합대학과 국제대학은 배정하지 아니한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전체에서 2명을 배정한다.) (개정 2023. 4. 14.)
  - 2. 직원 및 조교위원 직원 및 조교 5명(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전국대학 노동조합 서울과학기술대학교지부에서 추천하는 2명, 조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명)

- (개정 2019. 6. 12.. 2023. 4. 14.)
- 3. 학생위원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학생 3명 (개정 2023. 4. 14.)
- 4. 교수평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내부인사 1명, 외부인사 1명을 추천하되, 외부인사 가는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들어 추천한다.) (개정 2023. 4. 14.)
- 5. 졸업생위원 총동문회장이 추천하는 졸업생 2명 (개정 2023. 4. 14.)
- 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 총장은 그 사람을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장직무대행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총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⑤ 교수평의회 의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수평의회장 직무대행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교수평의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⑥ 추천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7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⑦ 총장은 중립적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간사와 사무직원 약간 명을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추천위원회에 파견 발령하여야 한다.
- ⑧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된다.
- ⑨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가 차기 총장으로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제5조(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선거의 관리(관할선관위가 관장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 2. 「위탁선거법」에 따른 관할선관위와의 협의
- 3.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 4.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의 개최
- 5. 총장임용후보자의 자격기준 및 연구윤리 검증
- 6.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및 공고
- 7.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6조에 따라 심의・의결하여 야 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총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개최한다.
  - ②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중요 결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에 속한 업무의 일부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속한 사무직원 중 약간 명을 소위원회에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1. 이 규정에서 정한 위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및 위원이 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3.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4. 학외인사 후보자의 추천인이 된 경우
  - 5. 위원 본인, 그 배우자(또는 배우자였던 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후보자가 된 경우
  - 6.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후 우리 대학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7. 그 밖에 불공정한 업무 수행 및 언행으로 논란을 야기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총장이 해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 제9조(위원의 보궐) ① 위원이 해임 또는 사임 등으로 궐위 시 총장은 그 궐위된 날부 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공고 후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그 5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직권 또는 후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스스로 후보자에 관한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11조(선거권) ① 선거일을 기준으로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휴직 중이 아닌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 ② 선거일을 기준으로 우리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 및 조교(휴직자 제외)와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 1. 공무원인 직원, 대학회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및 조교
  - 2. 선거일을 기준으로 등록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선거인으로 지정된 학생
  - ③ 추천위원회는 제2항의 참여범위와 참여비율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후보자선 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제12조(피선거권) 다음 제1항에 해당되면서 제2항을 충족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있다.
  - ① 학식과 덕망 및 경륜을 갖춘 유능한 인사
  - ② 후보자의 총장 임기 종료일까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에 의한 정년에 달하지 않는 자
- 제13조(총장 등의 선거 후보자 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후보자등록개시 5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23조제2항의 교무회의 위원(이하 "교무위원"이라 한다) 및 교수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 의장·부의장·사무처장(학칙개정 2021. 10. 1.)
  -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회의규정 제7조의 확대교무회의 위원(이하 "확대교무위원"이라 한다)
  - 3. 각 직능단체의 장(교수협의회장, 공무원직장협의회장,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과학 기술대학교지부 대표, 조교협의회장) 또는 임원 (개정 2019. 6. 12., 2023. 4. 14.)

### 제4장 선거기간 및 후보자등록

- 제14조(선거관리의 위탁) 선거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관할선관위에 위탁한다.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 제15조(선거일 결정 등)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에 속한 날을 선거일로 정한다.
  -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임기만료일 전 160일부터 100일 이내 (개정 2023. 4. 14.)
  - 2.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 :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
- 제16조(총장임용후보자 초빙공고 및 선거공고)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공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 20일 전까지 공고한다.
  - 1. 선거명
  - 2. 선거일
  - 3. 후보자 등록기간 및 장소
  - 4. 투표 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 5.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 6.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열람) ①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여 선거공고일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7일 전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 ② 선거인명부는 교원·직원·조교·학생선거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 1통(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본 1통을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결선투표 이상의 투표가 예상되는 경우 1차 선거인명부를 계속 사용할수 있다.
  -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작성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의 전일까지의 기간 중에 열람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및 장소를 학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

- 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에 서면으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관할선관위·이의신청자·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추천위원회 존속기간까지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⑦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방법으로 투표할 경우 추천위원회는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선거인명부를 디지털 파일 형태로써 작성, 열람, 전송의 방식을 적용하되,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 제18조(후보자 등록 등)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위탁선거법」제18조에 따라 후보자등록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1. 총장임용후보자 등록신청서 (개정 2019. 6. 12.)
  - 2. 교수 또는 부교수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3. 지원자 추천서 (학외인사에 한함)
  - 4. 기탁금 납부 확인서(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 6. 12.)
  - 5. 보직사퇴서(해당자에 한함)
  -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② 제1항의 접수 서류의 종류와 양식, 후보자의 접수무효 및 사퇴, 그 밖의 후보자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시행세칙」(이하 "규정 시행세칙"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 ③ 관할선관위가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관할선관위가 발행한 접수증과 제1항 각 호의 후보자등록신청 서류의 사본 각 1부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 후보자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지원자 소개서
  - 2. 이력서
  - 3.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기
  - 4. 서약서

- 5. 학교발전계획서
- ⑤ 추천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와 방법에 따라 게시할 수 있다.
- ⑥ 후보자가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선거홈페이지"라 한다)에 공지한다.
- ⑦ 후보자는 자신이 직접 관할선관위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
- ⑧ 이 규정에 따른 학외인사로서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무인(拇印)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 제19조(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백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관할선관위는 입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총장임용후보자 확정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탁금을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19. 6. 12.)
  - ③ 위원회는 1차 투표에서 유효득표 총수의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입후보자, 또는 선거기간 중 입후보자를 사퇴한 자의 기탁금은 각 기탁자의 명의로 서울과학기술 대학교 발전기금에 귀속시킨다.
  - ④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망한 경우 기탁금을 유족에게 반환한다. (개정 2019. 6. 12.)

# 제5장 선거운동

- 제20조(선거운동 등) ①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1. 선거공보 배부
  - 2.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 3. 전화, 문자전송,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 4. 선전벽보의 부착
  - 5. 소형인쇄물의 배부

- 6. 〈삭제〉 (2019. 6. 12.)
- ③ 선거일에 실시하는 합동연설회(실황중계 포함)를 제외하고 후보자는 제2항 각 호의 선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 ④ 후보자와 교원선거인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교원선거인은 제 2항제3호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 ⑤ 제2항제1호는 관할선관위에서 배부하고, 같은 항 제4호는 추천위원회에서 부착하며, 그 외 각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9. 6. 12.)
- 제21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선거인에게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 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2.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 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③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한다)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2.)
- 제22조(선거공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수량의 선거공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거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게재되어야 한다.
  - 1. 성명, 기호 및 사진
  - 2. 학력 및 주요 경력
  - 3. 주요 연구업적 목록
  - 4. 대학관 및 총장관

- 5. 우리 대학 발전방안에 관한 소견
- ③ 추천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확인할 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고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후보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수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선거공보를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한다.
- ⑤ 추천위원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발송을 하지 아니하고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우송하게 할 수 있다. 단, 학생선거인에게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않고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에만 게시한다. (개정 2019. 6. 12.)
- ⑥ 후보자가 제1항 후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한다.
- ⑦ 제출된 선거공보의 내용은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오기 또는 「위탁선거법」이나 이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 후보자는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신청을 하고 제출마감일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할 수 있다.
- ⑧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제2항제2호·제3호의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관할선관위가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붙일 수 있다.
- ⑨ 선거공보의 규격·면수·작성수량·제출수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3조(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① 추천위원회는 개최방법, 횟수, 일시, 장소를 정하여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② 후보자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의 참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의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의 실황을 중계하거나 사후에 공개토론회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다.
  - ④ 추천위원회가 주최하는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학내의 학과, 단체, 그리고 후보자는 소규모의 정견발표회,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 등의 소규모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 (개정 2019. 6. 12.)

- ⑤ 〈삭제〉 (2019. 6. 12.)
- ⑥ 〈삭제〉 (2019. 6. 12.)
-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 1. 전화로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
  - 2. 정보통신망의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이용하여 문자를 전송하거나 의견을 게시하는 방법
  - 3. 제2항에 따라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의 게시판에 글이나 화상·동 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개정2019. 6. 12.)
  -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 ② 총장은 제1항제3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편의, 선거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후보자의 자질·정책검증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내 정보통신망에 선거를 위한 선거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가 이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또는 선거공보를 기초로 후보자의 경력·자질·정책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④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에 관한 정보, 후보자가 게시한 글·화상·동영상 등에 거짓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추천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이의신청자 및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후보자에게 그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사실을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⑤ 선거홈페이지의 개설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5조(선전벽보)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전벽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전일까지 추천위원회에 선전벽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전벽보를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우리 대학의 주된 건물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선전벽보에 관하여는 이 규정 22조 선거공보 내용의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
  - ④ 선전벽보의 작성 내용, 규격, 수량,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25의2(소형인쇄물 배부)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인을 대상으로 소형인쇄물을 배부할 수 있다.다만, 소형인쇄물의 작성규격, 배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2.)
- 제26조(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 규정상의 정책홍보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 등을 하는 행위
  - 2.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 3.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 비방
  - 4. 추천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직원에게 보직 또는 인사상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 5.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추천위원회는 경고, 시정 명령 또는 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7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 등) ①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정한 사람 또는 간부급직원(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직원을 말한다)은 그 소속·담당하는 기관·부서·실·팀 등에 속한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

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6장 투표 및 총장임용후보자선정절차

- 제29조(투표·개표사무의 관리) ① 투표·개표에 관한 사무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관할선관위가 관리하되, 추천위원회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선관위와 협의한다.
  - ②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추천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관위의 바로 위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 **제30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에 의한 투표와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의한 투표로 한다.투표는 위 두 방법을 병행하거나 단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투표는 직접 · 비밀의 방법으로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투표방식, 환산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 제31조(용지 기표방식의 투표·개표의 참관) ① 후보자는 교원선거인 중에서 2명 이내의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표참관인은 투표 참관인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② 그 밖의 사람의 투표·개표의 참관, 개표관람은 관할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2조(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방법) ① 총장임용후보자는 선거인의 투표에서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1순위로, 차순위 득표를 한 후보자를 2순위로 정한 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표(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득표 순위에 따라 2순위까지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득표순위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다만, 후보자가 5명 초과할 경우 득표 순위에 따라 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 득표 후보자가 없을 경우 득표순위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개정 2019. 6. 12.)
  - ③ 제2항에 따른 결선투표에도 그 득표수가 같은 경우, 순위가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한다.
  - ④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순위가 정해지는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여

러 명이 있는 경우와 재투표 등의 자세한 선정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33조(선정결과 통보 및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임용후보자 2명의 선정 종료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통보하고 학내에 공고한다.
  - ② 총장은 선정된 임용후보자 2명을 총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총장이 임기 중에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34조(선거일 변경) ① 천재지변, 그 밖에 추천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선관위는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일등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일 변경에 따른 선거운동 및 선거비용 등 선거사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35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①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 ·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무효로 할수 있다.
  - 1.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의 규 정을 위반하였거나「위탁선거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2.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이 규정에 정한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고의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자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 ③ 추천위원회가 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한다.
- 제36조(연구윤리검증 및 선정취소) ① 추천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선정공고 후 총장임용후보자 2명의 연구윤리 저촉 여부의 검증을 우리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연구윤리위원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검증을 종료한 때에는 그 검증결과를 추천위원회 및 총장에게 통보한다.
-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추천위원회는 총장임용후보자의 연구윤리위반이 판명되었고 해당 연구윤리위반이 총장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윤리를 손상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을 경우,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취소를 의결한다.
- ⑤ 추천위원회가 제4항의 선정취소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내에 공고하고, 검증결과를 포함하여 선정취소결정을 총장 및 총장임용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이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추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⑥ 연구윤리 검증 절차 및 기한에 관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37조(선정 무효·취소에 따른 재선정 등) 추천위원회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한다.
  - 1. 이 규정에 따라 선정 공고된 제1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 가 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재투 표일을 정하고 선거일을 재공고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이 규정에 따라 선정 공고된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가 선정무효 또는 선정취소 가 된 경우에는, 1차투표 시 제3순위 득표자에 해당한 1명을 제2순위 총장임용후 보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방법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7장 보 칙

- 제38조(비용지급)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회 외부의 인사에게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업무 협조)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한 경우 해당 부서는 협력하여야 한다.
- 제40조(기타사항)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②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추천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465호, 2019. 3.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75호, 2019. 6.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규정 제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43호, 2023. 4.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